

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(배준영 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, 공항운영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도록 함 (안 제3조 및 제4조).
-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공항경제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공항경제권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공항경제사업계획을 작성·제출하도록 하며, 지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공항경제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공항경제권을 지정하도록 함 (안 제7조, 제10조 및 제12조).

II. 검토의견: 시·도지사의 의미 명확화 필요

안 제10조제1항은 “시·도지사”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항경제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같은 조 제2항은 공항경제권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“시·도지사”는 공항경제권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함.

한편, 안 제7조제3항은 “공항이 위치한 해당 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관할 시·도지사”로 약칭하고 있음.

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,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항경제권의 지정을 요청하고 공항경제권사업계획을 제출하는 “시·도지사”는 문맥상 공항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로 보아야 함.

따라서,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“시·도지사”를 “관할 시·도지사”로 하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함.

[수정의견]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10조(공항경제권의 지정 등) ① <u>시·도지사</u> 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항경제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	제10조(공항경제권의 지정 등) ① <u>관할 시·도지사</u> 는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

도”라 한다)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<u>시·도지사</u>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 ② <u>시·도지사</u>는 제1항에 따라 공항경제권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제12조에 따라 작성한 공항경제권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. ③ ~ ⑧ (생략)	----- ----- <u>관할 시·도지사</u> ----- -----. ② <u>관할 시·도지사</u>는----- ----- ----- -----. ③ ~ ⑧ (생략)
---	--

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수석전문위원 심정희)